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 개악된 건축사법은 환원되어야 한다

Things That Change and Those That Don't

- Architectural Code Should be Restored from Retrogressive Revision

18세기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이 지난 수천 년간 인류의 단순한 생활패턴을 혁명적으로 바꾸기 시작한 이후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걸친 그 파급과 속도는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기 말부터 시작되어 공산주의 국가까지 전 세계에 보급된 인터넷은 그와 비견할 수 없는 경천동지의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산업혁명이 한 세대 단위의 변혁이라면 나노시대를 살아가며 인터넷을 즐기고 유비쿼터스시대를 열고 있는 지금은 1년, 한 달, 하루, 한 시간 아니 분초가 변화하고 있다.

백과사전을 보면 세대를, 자녀가 태어나서 성장하여 부모의 일을 계승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통 15~30년 사이로 정의하고 있다. 옛날로 거슬러 오를수록 농경과 목축사회인만큼 15년 쪽에 가까울 것이요 현대처럼 많은 공부를 하고 사회진출을 해야 하는 시대에는 30년 쪽에 가까울 것이다. 그래서 O. 로렌츠는 3세대 1세기론을 주창하고 있다. 또한 국어사전을 보면, 이를 '공통의 체험을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식이나 풍속을 전개하는 일정폭의 연령층'이라 풀이하고 있다. 이 사전대로라면 이러한 세대의 기간은 대폭 단축되어야 한다. 문명과 문화적으로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공자시대에도 세대 간 갈등은 존재하였기에, 그는 '요즈음 젊은이들이 예의가 없다'고 한탄하였다. 그렇다면 요즈음 우리가 젊은이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30년은 고사하고 10년 단위 또한 옛날 이야기이다. 20세기 중반에는 전전과 전후세대로 구분하였고 후반기에도 몇 년 단위로 X세대 Y세대라고 구분했으나 이제는 1년 단위로 생각과 행동이 달라 학생들은 학년이 곧 세대라고 말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이런 말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지만 분명 세대 간의 간격이 좁아진 것만은 사실이다.

세대 차이는 생각과 의식, 가치관과 행동, 풍습을 달리하는데 있다. 기성세대가 술과 고스톱문화라면 이들은 PC방과 스키장문화이며, OFF LINE과 ON LINE이며 독수리타법과 엄지족의 차이이다. 결혼비용은 부모의 의무이며 축의금은 신혼 종자돈으로 다 받아야 하고, 아이들 첫돌잔치도 비용은 할아버지가 축의금은 손자가 가져야 하는 이기주의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이 변한다 해도 인간의 기저에 흐르는 보편적인 것은 변하지 않으니 곧 인간에 대한 사랑, 봉사, 헌신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정직, 공선사후 등의 가치가 끝내 인정받고 영존한다는 사실이다.

건축사협회가 건축사법에 의해 창립된지 올해로 40년이 된다. 우리협회에서는 이에 따라 금년 정기총회에서 건축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시대변화에 앞장서는 미래지향적인 제도를 강구하고 건축사의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간 건축사법은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국민정부시절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개악이 되었으니, 바로 건축사협회의 복수화 허용과 건축사협회에

의사의 실수는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건축사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가져온다.
변호사와 같이 건축사도 허가를 위해 수많은 법을 다루기에 과거에는 법무 업무 서업으로 분류했다.
생명과 재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변호사와 의사가 단일협회를 유지하고 있다면
건축사협회도 국민을 위해 당연히 단일협회가 되어야 한다.

가입하지 않고도 개업할 수 있는 것이었다. 당시 모든 단체가 그리해야한다고 하여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고 말았으나 현재 시행되는 변호사법이나 의사협회 정관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변호사법은 사무소 개설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법무조합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도 한층 강화되어 개업의뿐 아니라 모든 의사면허를 취득한자는 반드시 등록하고 공제회에도 의무가입하도록 명시되어있다. 이는 종전의 우리 건축사협회와 같은 것으로 이들은 규제개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이들이 통상적인 협회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켰기에 온전했는지 아니면 파워가 크기에 견드리기 어려웠을 것이라 사료된다. 실제로 인류 공통의 기초적 필수조건인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고, 재산과 신체상 불이익을 없애는 것이 차선이니 이들이 첫째, 둘째를 차지함은 당연지사이다. 고로 이들은 '인명과 재산, 이 두가지는 국민과 밀접한 관계로 협회가 복수가 되어 각기 다른 해석과 판단이 나올 경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니 그래도 좋은가' 반문하며 설득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렇다면 우리는 참 억울하다. 왜냐하면 이들이 독점적 위치에 그대로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대로 있어야할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명의 문제로 보더라도 의사는 진단과 시술을 잘못할 경우 한사람의 생명에 대한 것이지만 건축사는 삼풍 사고 등에서 보듯이 수십 수백명의 인명과 관련되어 있기에 그 책임이 더욱 막중하며, 변호사 업무 중 대다수인 재산 등에 관한 것도 건축사의 디자인 및 기획 능력에 따라 대단히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이 속에 포함된 윤리위원회의 문제이다. 의사협회는 권리정지 3년과 고발, 벌금 등을 결정할 수 있고, 변호사협회는 영구제명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윤리위원회를 갖고 있으나 우리협회는 이와 유사한 윤리위원회가 소멸되고 허명만 남아있는 현실이다.

현재 건축사의 총 개업인원은 약 1만여명으로 우리협회 가입자가 8,000여명, 나머지 미가입회원이 2,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첫째, 설계도서신고제 폐지에 따라 서명건축사를 허가과정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건축사 성명을 도용하여 건축허가를 얻을 수 있으며, 무등록자도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설계업무를 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둘째, 건축사 면허의 대여가 성행한다는 점이다. 우리협회에 모두 등록된 과거에는 감사를 실시하거나 지도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지금은 이를 행할 수 없으므로 적발이 불가능하며, 결국 이로 인한 부실은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셋째, 설계, 감리건축사의 임의교체가 만연되고 있는 점이다. 계획 설계를 받아놓고 실제 설계는 다른 건축사를 통해 계획 설계대로 행하는 것

건축사 명의 도용, 유사명칭, 면허대여, 감리설계자의 임의교체로 인한 소송 등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개업건축사는 반드시 법정(法定) 협회에 의무 가입해야. 복수체제 수년에도 새 단체 탄생 못해.
세월따라 인간의 모든 것이 변해도 베푸는 사랑의 기쁨은 변치 않듯이 국민민복의 기초위에 법을 세워야 한다.
건축사법의 환원은 국민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은 물론 공사 중에도 정당한 감리자의 말이 건축주의 이익에 반할 경우 감리자나 설계자를 임의로 교체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이러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저작권과 윤리강령에 의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민법에 의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피해 건축사는 불필요한 것에 시간과 정력을 소비해야 하며 건축주는 공사의 지연 등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건축사의 품위보전뿐만 아니라 업무개선 및 건축물의 연구 발전을 통한 건축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런데 개업인원의 25%는 가입하지 않음으로 무임승차를 하고 있으며 협회의 재정은 악화되어 상기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물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건축사는 10개 이상 20여개에 달하는 법의 규정에 맞추어야 한다. 건축사 업무는 그래서 종전에는 법무 업이며 국민을 위한 서업이었다. 따라서 건교부는 당연히 변호사나 의사처럼 국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건축사에게 그들과 마찬가지로의 제도 즉, 종전과 같은 규정을 마련해 줘야한다.

최악의 경우 지금처럼 복수단체를 허용할 경우 개업건축사는 반드시 어느 한 단체에 속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단체가 복수화 되면 그만큼 모든 것이 마이너스 요인이 많겠지만 그래도 무임승차 인원이 있는 것 보다는 나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왜냐하면 복수단체를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다른 단체의 출현은 없으며 창립된 지 수년이 되는 새건협도 협회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언젠가 그리된다하더라도 윤리위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자기회원 감싸기로 형평성이 훼손되어 파국을 맞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의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불가한 것이다.

지금 정부와 협회에서는 UIA규정에 맞춘 건축교육제도 개편과 함께 건축사자격관리제도의 정지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건축사등록원을 신설하고자 하는바 필자의 의견대로 한다면, 후자는 우리협회에 약간의 기능과 업무를 부여하면 되는 것으로써 굳이 2중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인터넷을 몰라도, 엄지족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이 베푸는 사랑인 것처럼 건축사법에도 국민을 위한 변치 않는 본질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규제개혁이 아닌 개혁이 되어버린 이 법은 이만큼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이미 적시한대로 국민을 위해 빨리 되 돌려놓아야 한다. 분명 이는 우리의 사리사욕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이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국민민복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ㄹ